

당첨자(예비입주자)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(특별공급)



구분	일정	장소	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방문예약 방법
일정 안내	당첨자 서류접수	2021.09.25(토) ~ 10.03(일)	견본주택 내방 접수 (10:00 ~ 16:00) ※ 당첨자 발표일 [2021.09.24(금)] 이후 당사 홈페이지(http://yj-thehue.com/)
	계약체결	2021.11.16(화) ~ 11.20(토)	

구분	해당서류	대상	확인 사항
필수 구비서류	주민등록표 등본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
	주민등록표 초본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
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출입국 사실증명원	본인	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9.03)까지로 설정하여 발급
	인감증명서	본인	-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/ 용도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용)
	인감도장	본인	-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
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필요시 추가 구비서류 (해당자)	주민등록표 등본	배우자 및 세대구성원	- 당첨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-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주택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
	주민등록표 초본	배우자 및 세대구성원	-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 분리된 주택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
	재직증명서	본인	-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10년 이상(25년 이상 포함) 장기복무 군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
	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	대상자	-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(장애인등록증)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)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
다자녀 가구	주민등록표 초본	피부양자 직계존속	-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,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)
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 또는 직계비속	※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-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-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
	한부모가족 증명서	본인	-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(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)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-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 등)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
	입양관계증명서	본인	-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※ 입양의 경우
	노부모 부양	훈인관계증명서	본인
주민등록표 초본		피부양 직계존속	-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
가족관계증명서		피부양 직계존속	※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-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-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	본인 및 배우자	-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 등)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
장애인등록증 (복지카드)		피부양 직계존속	-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
출입국 사실증명원		피부양 직계존속	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9.03)까지로 설정하여 발급

당첨자(예비입주자)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(특별공급)



구분	해당서류	대상	확인 사항		
신혼부부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-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,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 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"상세"로 발급 ※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을 위해 다시 제출해야 함		
	가족관계증명서	본인 및 배우자	※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-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-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		
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및 배우자	-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 등)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		
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	본인 및 배우자	- 입양의 경우		
생애최초	주민등록표 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-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)		
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※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		
		피부양 직계비속	※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-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		
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및 배우자	-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 등)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		
	소득세납부 입증서류	본인	-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「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 납부 입증서류」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		
■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 납부 입증서류 ※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및 관계기관 직인 날인 ※					
서류구분	자격확인	증빙서류제출		발급처	
		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/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	① 해당직장 / 세무서 ② 건강보험 공단
		자영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/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	
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(2020.09.04~2021.09.03)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 (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)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			
소득세 납부 입증서류	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	※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(종합소득세 납부자)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		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/ 세무서	
계약시 구비서류	계약금 입금 확인서류	본인	-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 확인서류(당첨자 본인명의 입금) ※ 현장 수납 불가		
	인감도장	본인	- 기 제출한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(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)		
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		
	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	본인	- 홈페이지 게시 및 견본주택 비치 예정		
	인지세 납부 수입인지	본인	-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(www.e-revenuestamp.or.kr) 구매 후 출력 → 계약 시 지참		
제3자 대리신청 시 (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으로 간주)			• 상기 서류 외 추가 구비사항 - 청약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부(용도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) - 청약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(견본주택 비치) - 대리신청자의 신분증, 인장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날인 및 계약은 본인만 가능		

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[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9.03 이후 발행 분)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.

※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가 필요합니다.

- 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(등기접수일 기준) 또는 건축물관리대장(처리일 기준, 가옥대장등본 포함)
- ②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등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(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은 공급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)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-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
- 세대 구성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,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
-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
-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